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26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임호선·정준호·차지호

김주영 • 이연희 • 복기왕

고민정 • 이재정 • 이춘석

윤호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이하 "해양이용협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유발(誘發)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굴착면적을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협의를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을 "그 밖에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와 해양이용협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 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되, 유발(誘發) 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일반 해양이용협의사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
- 2.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제13조제2항 중 "제9조제4항제1호"를 "제9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상) ①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 우 제2호에 따른 간이 해양이 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
		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되, 유발(誘發)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일반 해양이용협의사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 2.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 소구되었어
<u>②</u> ~ <u>④</u> (생 략)		<u>한 소규모 사업</u> ③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⑤ 협의대상사업의 -	<u>구체적인</u>	⑥ 그 밖에 협의대상사업의 구

<u>종류 및 범위 등</u>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저

- ① (생 략)
- ②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대상에 관하여는 <u>제9조제4항제</u><u>1호</u>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 ③ (생 략)

	체적인 종류 및 범위와 해양이
	용협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
	<u>ठ</u> ो
4]	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9조제5항제1</u>
	<u>\$\bar{\bar{\bar{\bar{\bar{\bar{\bar{</u>

③ (현행과 같음)